

/제/4/회/전/국/도/서/판/인/큰/모/임/제/1/주/제/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른 독서환경조성 방안

손 정 표

〈경북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교수〉

### 1. 서 언

한 사회의 문화는 책으로부터 수렴되고 한 사회의 정신은 그 책에서 방사되므로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객관적 측정은 그 국민의 독서량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독서는 옛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문화형성의 하나의 가치지표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해 왔다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양상을 보면 광복후의 우리의 현대사란 책의 상실, 책에 대한 무관심, 독서로부터의 소원상태로 일관되어 왔다고 표현될 정도로 「독서부재」의 심각성이 지적되어 왔고, 독서운동을 범사회적 운동으로 고조화 시킬 정도로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책을 읽어야 한다」는 극히 기초적인 사회적 명제의 해결방안 모색 단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아무튼 그 이유야 어디에 있건 이러한 현상의 지속이란 심층적으로 문화가 응집될 초점을 넓게 하는 것이며, 정신의 힘이 개발 보급될 채널을 놓치게 하는 것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보다 폭넓고 깊은 지식의 소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변천되어 감에 따라 지식의 세분화 현상과 10년마다 3배로

증가하는 정보 출판량의 급증현상, 미시적 정보에 대한 요구의 급증현상 등이 초래되므로써, 서기 2000년대에 도래할 제4차 산업사회인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계속적인 지식개발 및 지식 생산자의 육성 등의 문제가 주요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회도 점차 자율화, 국제화, 개방화의 방향으로 변화해 감에 따라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상품 및 신제품의 개발 등 다방면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의 배양이 필요시되는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그 복잡성을 처리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나 적응을 위한 사회적 기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날로 고독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사회에 낙후되지 않는 인간이 되려면 보다 많은 독서를 통한 지식의 확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대사회 속에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활과 유리화된 관념상태가 아니라 바로 생활과 일치화된 관념상태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전환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도 지난 3월 24일에는 제정된지 3년 밖에 되지 않는 「도서관진흥법」을 폐지하고 독서진흥관련 규정을 강화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법률 제4746호로 제정 공포하는 한편, 지난 2월 3일에는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3월 31일에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바람직한 한국인상의 정립과 책읽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회의 구현을 위한 독서운동을 전개하고자 그 출범식을 갖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독서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서진흥사업이란 단순히 그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인 운동을 가시적으로 전개해 나가면 곧 독서의 생활화가 이 땅에 정착될 것이라고 하는 변수간의 관계에서 그 해법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려면 무엇보다도 이의 기여조건인 '손쉽게 독서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환경기반의 조성'이라고 하는 매개변수의 정립을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의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독서환경을 보면 이 사업의 조직적, 지속적 추진을 위한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볼 때 이들의 환경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따라서 필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근거하여 앞으로 마련될 독서진정책 및 계획수립과 시행령 제정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생활화 추진을 위한 환경기반 조성 방안에 관한 우견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독서환경기반구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로 규정된 독서진흥시책과 동법 제49조에 규정된 학교등의 독서진흥활동

등이 적극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독서하는 습관이 온 국민의 생활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려면 전술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독서환경기반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현 실정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1993년 3월 현재 공립이 285개관(사립 포함시 300개관)으로 인구 153,851명(사립 포함시 146,158)당 1개관(전진국 2만 ~5만명, 발전도상국 10만명 내외), 학교도서관은 설치율이 평균 65.8%(초등 65.2%, 중등 54.4%, 고등 84.8%)로 나타나 도서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설립도 지역의 규모나 인구수에 관계없이 규모가 큰 단일도서관이나 수개의 독립된 도서관 설립만으로 그친 채,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독서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봉사거점망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이용자와 도서관간의 공간단축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동도서관도 1993년 3월 현재 전국에 공립이 75대(사립 포함시 77대)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중 1개월에 몇회 정도 대출문고를 배달해 주는 배본차 역할을 하는 코란도, 봉고, 지프 등의 차종을 제외하고 항구적인 서가장치를 한 명실상부한 이동도서관은 36대에 불과하고 있으며(미국 2,000여대, 영국 500여대, 일본 700여대), 문화체육부가 발표한 「94년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활동지침」을 보더라도 대도시는 인구 30만명당 1개관, 중소도시는 인구 10만명당 1개관, 인구 1만명 이상의 읍지역당 1개관 확보를 세부추진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독서환경하에서는 다각적, 의욕적으로 펼쳐보고자 한 독서활성화 추진계획도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항구적인 정착화를 도모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공공도서관이란 대학이나 학교 및 특수도서관과는 달리 봉사대상 지역의 규모, 인구분포, 교육수준, 문화시설과 기업체 유형, 자연적 및 인위적인 지역경계와 지형 등 지리적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중규모 이상의 도시의 경우에는 벨라드(T. H. Ballard)가 지적한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패턴에서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거리와 도서관 이용간에는 역관계를 이루고 있고, 대다수 이용자들은 도서관 장서 규모에 관계없이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주민들의 거주지가 도서관 등의 독서시설의 소재지에서 반경 400m를 벗어나면 그 이용률이 기하급수적으로 격감하여 지역 주민들의 독서의 욕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된 1~2개의 도서관만으로는 관내 자료열람까지 포함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독서 및 정보의 욕구를 30% 이상 충족시키기 어렵다 하겠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한 예를 들면 1993년 3월 현재 전국 총 300개관(1관당 평균 28,236권 소장)의 연평균 대출책수가 1관당 16,754권인데 비해 미활동차량 2대를 제외한 전국 총 75대의 이동도서관(1대당 500~2,000권 수장)의 연평균 대출책수는 1대당 20,255권으로 다른 봉사거점을 제외한 이동도서관(순회문고용 포함)만 가지고도 1.21배(1992년은 1.5배)의 행정효과를 올리고 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가시적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것 같아 공공도서관과 연계되지 않는 점조직형태의 독립문고를 여러 곳에 설치하거나 이동도서관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논 가운데 있는 농업용수용 샘처럼 일시적인 해갈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양적, 질적인 자료 공급의 한계로 인하여 계속적인 기갈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시행착오를 겪게 됨은 이미 15~18C에 걸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구라파 지역과 미국에서 성행했던 마을 도서관, 회원제 도서관, 조합도서관이라든지, 1961년부터 오늘까지 정부보조사업으로 육성되어 오고 있는 마을문고가 1974년에 35,000개이었던 것이 1993년에는 3,651개로 감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독서진흥에 비중을 높인 법규정을 제정한 취지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독서생활화를 꾀하고자 한 데 있다면 이들의 일련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반드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독서환경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① 필자가 1990년에 발표한 한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바처럼 시·구·읍·면단위까지의 공공도서관 총수요가 1,848개관으로 나타나고 있고, 문화발전 연구소가 1993년에 발표한 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을 근거로 산출한 수요기대치가 1998년까지 1170.2개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1년의 국민소득만으로 볼 때 이미 510개관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재인식하여 정부당국은 1시·구·읍·면당 1개관을 설치하되,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1항에 근거하여 인구 20만명 이상의 시·구에는 그 초과하는 인구 8만~10만명당 1개 이상의 분관을 설치하도록 앞으로 제정될 동법시행령의 관련조문에 이를 명문화함과 더불어 10개년 이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 수립시에는 하이만(H. H. Hyman)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책을 읽을 확률은 교육정도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규모 이상 도시권 계획을 중기계획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더불어 법 제39조 2항에 근거하여 공립문고를 설립할 때는 중규모 이상 시의 경우는 적어도 동단위당 2개 이상, 소도

시 및 읍의 경우는 동단위당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생명력을 가지게 하려면 법 제40조 2항에 근거하여 공립공공도서관 산하의 봉사거점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도서관의 경우도 적어도 1시·구·군에 1대 이상으로 총 234대는 배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 독서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면 한 지역내의 봉사거점들을 점적형태가 아니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중앙관을 축으로 하여 한 개의 망이 되도록 단일 공공도서관 시스템 형태나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는 다단위 통합시스템 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 경우 봉사거점망 조직의 형태는 분구가 되어 있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중앙관(시스템 본부) – 지구도서관(구단위 지역 총괄 분관) – 대·중·소 분관 – 이동도서관 – 공립문고·기탁소·배본소·대출문고로 이어지고, 분구가 되어 있지 않은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중앙관(시스템 본부) – 대·중·소 분관, 이동도서관 – 공립문고·기탁소·배본소·대출문고로, 인구 20만 도시는 중앙관(시스템 본부) – 소분관 및 이동도서관 – 공립문고·기탁소·배본소·대출문고로, 인구 10만 내외의 소도시는 단일도서관 – 기탁소·공립문고·배본소·대출문고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단일공공도서관 시스템 형태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재정적인 이유로 어려울 경우에는 상기한 봉사거점망 중 중분관 이상은 전술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그 대신 중앙관을 축으로 30~50평( $99\sim165m^2$ ) 규모의 건물 임대형태인 소분관과 공립문고, 기탁소 및 기타 봉사거점들을 배치하는 형태의 망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그리고 군단위 지역의 경우

는 읍이 없거나 1개 읍만 있는 군은 군단위 중앙관(군 전체의 시스템 본부) – 이동도서관, 공립문고, 면단위 분관 – 자연부락 단위 대출문고로, 1개 읍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군은 중앙관(군 전체의 시스템 본부) – 읍단위 분관, 공립문고, 이동도서관, 면단위 분관 – 자연부락 단위 대출문고로 이어지는 단일공공도서관 시스템 형태로 구축하거나, 운영주체간에 행정기능이 독립되어 있어 이 형태가 어려울 경우는 읍간의 협정을 거쳐 군청 소재지가 있는 읍공공도서관을 시스템 본부로 설정하여 군단위 중앙관(군 전체의 시스템 본부) – 읍단위도서관, 이동도서관, 공립문고, 면단위 분관 – 자연부락단위 대출문고로 이어지는 광역 지역망 형태의 다단위 통합시스템 형태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와 같은 시스템들의 구축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 독서생활화 기반구축의 한 방안으로 필자가 한 논문에서 구체적인 모형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군 대출중앙도서관 – 면단위 대출도서관 – 자연부락단위 마을문고 또는 대출문고로 연결되는 기능적 축면에서의 대출도서관 시스템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현실지향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이는 상기한 행정체계상의 시스템 구조 속에서 별도의 시설투자 없이 1군당 10,000여권의 대출전용 자료만을 가지고 기능적으로 조직화 되는 시스템으로서, 농어촌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보아 다양한 관내 주주의 봉사보다는 대출위주의 연장봉사활동이 주축이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면단위의 경우는 15평( $49m^2$ ) 규모의 좁은 공간만으로도 주어진 기능을 수행해 낼 수 있다 하겠다. 아울러 이와 같은 시스템들을 구축할 때에는 법 제39조 3항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주거단지 건축물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교통시설 등과 같은 공공이용시설에 설립되는 사립문고와 기

존의 마을문고도 대출문고의 한 봉사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③ 독서진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려면 봉사거점들의 소요공간과 자료수장공간 및 독서를 비롯한 각종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 1인당 공공도서관 건물면적을 현 평균  $0.01m^2(0.0055\sim 0.03m^2)$ 에서 분관까지를 포함하여 봉사대상 인구규모에 따라 최소 한  $0.016\sim 0.023m^2$ , 6만 미만  $0.023m^2$ , 20만 미만  $0.022m^2$ , 50만 미만  $0.017m^2$ , 50만 이상  $0.016m^2$ ) 이상이 되도록 그 기준을 상향시키도록 하고, 더 불어 내부공간구성도 폐가제 중심, 독서실 중심을 지향하고 개가제 중심, 이용자별 자료 중심, 각종 프로그램운영 중심 공간구성으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④ 학교도서관은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통해 아동, 학생의 독서습관을 형성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이라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더 우기 법 제47조 2항을 보면, “교육부장관은……각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독서관련 교과용 도서의 편찬 발행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4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학교에 독서모임을 두도록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학교를 통한 독서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현재 도서관이 미설치된 학교(초등 34.8%, 중등 45.6%, 고등 15.2%)는 조속히 설치 완료하고, 학생 1인당 도서관 연면적도 현재 국민학교  $0.054m^2$ , 중학교  $0.099m^2$ , 고등학교  $0.17m^2$ 인 수준을 국민학교  $0.2m^2$ , 중·고등학교  $0.27m^2$  이상의

수준이 되도록 하며, 열람석수도 현재 국민학교의 경우 학생수의 3.3%, 중학교 5.8%, 고등학교 10.5%인 수준을 초·중·고 공히 최소한 학생수의 10% 이상 수준이 되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독서활동이란 전교과, 전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폭넓은 지도의 장을 필요로 하므로 사서교사 배치율이 현재 4.0%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계적인 독서지도의 실천이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각급 학교는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독서지도가 하나의 방향을 목표로 하여 일관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자료 확충

전술한 봉사거점망 구축과 더불어 독서생활화 풍토 조성의 영향 요소 가운데서 빼 놓을 수 없는 요소가 풍부한 독서자료의 확보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정을 보면 공공도서관은 1993년 3월 현재 인구 1인당 0.19권(선진국 3권 내외, 발전도상국 0.5권 내외)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교도서관은 학생 1인당 3.1권(선진국 5~10권)으로 나타나 이처럼 열악한 독서환경하에서는 아무리 대중과 함께 하는 도서관을 이루하고 싶어도 학생들의 공부방 구실 이상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대중속에 파고 들어가 독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도서관이 되게 하려면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3분의 1 수준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자료확충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① 인구 8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적어도 1인당 0.5권 이상, 인구 10만 이하의 시·읍·면의 경우는 1인당 1권 이상, 그 밖의 시는 인구수에 따라 0.6~0.8권 이상을(외국의 기준은 대체로 1.5~2권이

며, 봉사대상 인구가 적은 지역은 2.5~3권임), 연간 증가책수는 이 기준에 대한 10%(0.05~0.1권)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연속간행물은 최저 50종을 기본단위로 하되 협행법적기준처럼 인구 1천명당 1종이상의 추가를(국제도서관연맹은 최저 기본 50종, 인구 1천명당 10종 권장), 컴퓨터 자료를 포함한 시청각자료는 도서관 프로그램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자료이므로 인구 1천명당 기본 10점 이상, 연간 증가 1점 이상을(국제도서관연맹은 음반 혹은 테이프자료만도 인구 1인당 기본 1매, 연간증가 0.15매 권장) 갖추도록 하며, 전체 장서의 25% 이상은 아동용 자료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② 독서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993년 3월 현재 도서관 운영비의 6.26% 수준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자료구입비를 2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자립도를 보면 특별시·직할시를 제외하고는 평균 42.2%에 불과하고, 교육부 산하 공공도서관들도 그 운영비의 80% 이상이 학생들의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는가 하면 그나마도 일부 도서관들은 지역주민 전체에게 봉사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국고 등의 지원이 없이는 상기와 같은 자료 수준으로의 상향조정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따라서 독서진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사업범위에 공립공공도서관 운영 및 자료비 지원 항목을 설정하거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에서의 보조 방안 또는 출판진흥은 물론 도서관의 자료화증 방안의 일환으로 저자

나 출판사가 국·공립 공공도서관에 기증하는 도서에 대한 국가보상체계의 확립 등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③ 학교도서관의 실태를 보면, 1993년 3월 현재 학생 1인당 평균 장서수가 초등 3.4권, 중등 2.6권, 고등 3.5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독서습관을 조성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법 제49조에 명시된 독서진흥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려면 학생 1인당 장서를 초등 6권, 중·고등 10권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고, 연차증가량도 학생용 자료의 경우는 그 수명이 10년 이하이기 때문에 학생 1인당 초등 0.6권, 중·고등 1권 수준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서 구성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자료구입비를 독립 항목으로 설정하고, 상기한 연차증가량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면 초등은 적어도 학생 1인당 4,800원(월 400원), 중·고등은 7,200원(월 600원) 이상을 금년도 자료구입비로 책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 공공봉사활동 강화

도서관 봉사의 본질과 목적이란 자료보존주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자료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자료이용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1993년 3월 현재 264개 공립공공도서관(개관 예정도서관 제외) 중 233개관(88.3%)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문학작품등 가벼운 읽을거리 중심으로 관외대출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대출제한 책수와 대출기간도 짧고, 봉사거점망을 통한 연장봉사활동도 대도시에 있는 소수의 공공도서관에서 소극적

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학교 도서관도 대동소이한 바,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극히 제한된 시간에만 대출을 허용하거나 3학년생들의 독서실로 이용되는 등 소극적 봉사에 그치는 도서관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이와 같은 환경아래서는 바람직한 독서습관이 형성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파고 들어간 공공도서관, 독서를 통한 문제해결의 장이요. 사색의 장인 학교도서관이 될 수 있는 독서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그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①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의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자유스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개체로 운영하고, 직장인이나 학생들을 위해 야간에도 자료의 이용 및 대출이 가능하도록 봉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 독서생활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마이크로 형태자료, 희귀자료 등 극히 제한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일반도서는 물론 시청각자료에 이르기까지 관외대출을 허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 관외대출의 경우 대출기간과 대출제한책수의 범위 설정은 자관의 장서량에 따라 다르다 하겠으나, 장서량이 적을 경우에는 대체로 1주일 2책 정도로 국한하더라도 장서량의 증가에 따라 기간과 제한 책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④ 시간적, 환경적 제약 때문에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대출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배본소의 배치 확대, 전화 또는 서면 대출신청방식에 의한 우편대출제도의 채택 등을 통해 관외대출을 확대시켜 찾아오는 도서관의 개념이 아니라 찾아가는 도서관의 개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5. 결 론

적극적인 독서진흥운동의 전개를 통해 독서생활화를 대중속에 뿌리내리게 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독서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환경조성을 전술한 시스템 구축과 시설 및 자료확충,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과감한 재정적 투자가 없이는 더욱 되기가 어렵다 함은 1958년의 「농촌문고」운동(농어촌 책보내기 운동)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 당국을 비롯하여 여러 단체들에 의해 전개되어 왔던 일련의 독서운동의 결과를 보더라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이번 기회에 국민 독서생활화가 반드시 이 땅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기반 조성에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며, 아울러 도서관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당국의 의지와 독서세물결운동 추진의 의의를 충분히 인지하여 보다 적극적인 봉사정책을 수립하고, 공공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및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 독서 모임 갖기 운동 및 국민학교와 연계된 모자체읽기 운동 전개와 아동·청소년·성인용 신착자료속보 작성 배포,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개발 운영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는 체계적인 독서지도와 수업시작전 20~30분간 책읽기 운동, 과제해결을 위한 연구식 독서모임 갖기 운동 및 선정도서목록 작성 배포 등을, 각종 사업장들은 한 연구 결과에서 좋은 독서환경을 가진 생산근로자들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낮은 산업재해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음을 주목하여 근로자 독서모임 갖기 운동 또는 공공도서관과 연계된 사립문고나 기탁소, 대출문고, 설치를 통한 직장인 독서모임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